

『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의 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
-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규정(안 제4조)
-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
능률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
있도록 정함(안 제5조)
- 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절차 규정(안 제6조)
- 포상에 대한 내용 규정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
조례안」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에 규정된 보조금
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
 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
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,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
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·단체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,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